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-518호

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” 제26조(판로지원사업)에 따라 2023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09. 19.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2023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

1

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 시장 파견,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 도모

□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12월

□ 신청대상 : 업종별 단체(협회·조합 등), 수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기업 등

□ 사업규모 : 30개 컨소시엄 내외 *추후 '23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 후 확정 예정

구분	사업 수행방식	규모(안)
전문업종 수출컨소시엄	업종별 단체 등이 주관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상담회 운영	30개
해외전시회(오프라인)	해외전시회에 한국관 조성, 참여기업 단체 파견	20개
수출상담회(오프라인)	해외 타겟국에서 현지바이어 초청 1:1 수출상담회 개최	10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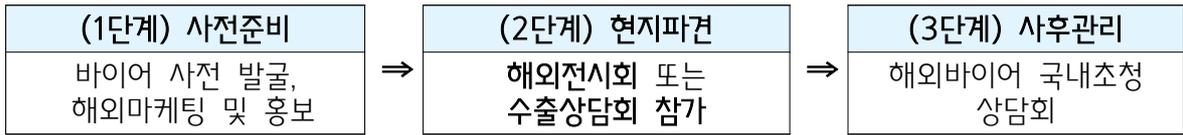
* 지원분야별 복수 신청 가능하며, 최종 선정 규모는 예산규모 및 수요에 맞게 탄력적 운영

□ 사업내용

- 전문업종별(품목별)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전시회 또는 현지 수출상담회 단체 참가시 해외마케팅 활동관련 비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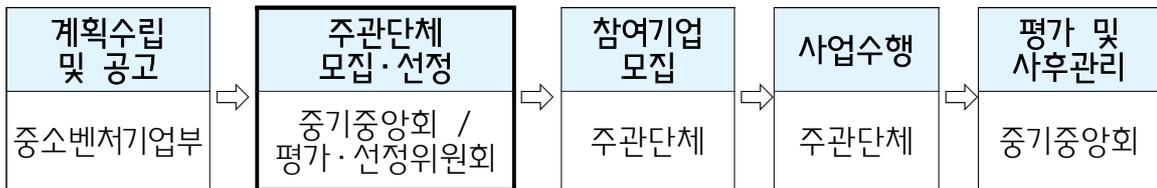
- 컨소시엄별 3단계(사전준비-현지파견-사후관리)로 사업 구성·추진

〈 수출컨소시엄사업 구조도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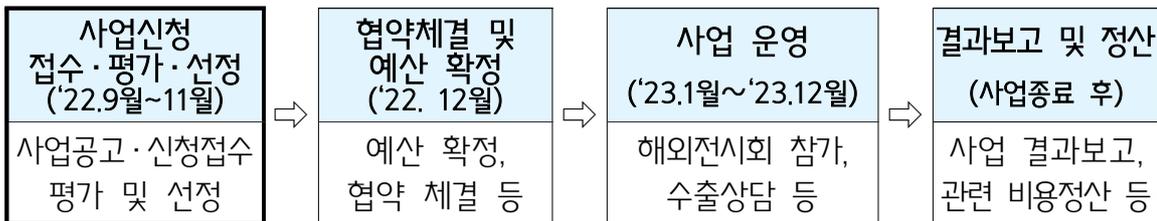


□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(추진절차)



○ (세부일정)



2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

□ 지원내용

- 지원기간 : 2023년 1월~12월(사업종료일)
- 지원항목 : 전시·상담장 부스임차료, 장치비 등 공통 경비 국고 지원
 - 추진단계별 지원한도 내 70~100% 지원*

* 세부 지원항목은 [참고1] 「수출컨소시엄 세부 지원 기준」 참조

□ 지원방식

- 현지 파견 전, 각 사업별 既배정된 국고보조금 예산의 90% 先지급,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후 사후정산
 - 적격증빙 지출금액에 한해 최종 정산·비용 지원(미집행액은 반납조치)
 - * 단, 각 사업년도 1분기 개최 전시회의 경우, 보조금 先지급 없이 사업종료 후 사후정산 예정
- 유의사항
 - 현 운영지침이 개정된 경우, 개정된 해당 사업년도 운영지침 적용
 - 2023년 정부예산 편성결과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
3 신청자격

- **(주관단체)**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(협동조합, 협회 등), 민간전문기업(전문무역상사, 전시전문기업 등), 수출유관기관 등
- **(참여기업)** 중소기업기본법(제2조) 규정에 의한 ‘중소기업’
 - 사업별 지원대상 참여기업은 주관단체가 모집 및 선정
 - 단,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(22.5.19 시행)에 따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할 경우, 동 법 제5조에 따라 본회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필요

〈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(주관단체 및 참여기업 모두 해당) 〉

- ① 세금(국세 및 지방세) 체납중인 경우
-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‘신용정보관리규약’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
- ③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
- ④ 휴·폐업중인 경우
-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

4

평가방법 및 선정

□ 평가방법 및 항목

- (평가방법)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
 - 단, 동일사업에 대해 복수 주관단체가 신청하고 서면평가 점수격차가 3점 미만의 경우, 선정위원회에서 PT심사 실시 예정
- (평가항목) 정성평가 60점 + 정량평가 40점, 총 100점(± 가감점10점)
 - (정성) 단계별 사업계획, 전략성, 주관단체 사업 운영능력 등 평가
 - (정량) 주관단체 해외마케팅 사업실적, 성과평과 결과 등 평가
 - * 세부 평가항목은 [참고2] 「수출컨소시엄 평가표」 참조
- (제외대상) 신청한 사업이 타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는 경우

□ 선정방법

- (최종선정) 수출컨소시엄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
- (제외대상) 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 및 既선정 유망전시회 사업 포함하여 2023년 해당 주관단체 수행 사업이 4개를 초과할 경우

5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·접수 기간 : 2022. 9. 19(월) ~ 9. 30(금) 17:00까지 * 시간엄수

구분	기간
공고일	9.19(월)
신청·접수	9.19(월)~9.30(금)
평가·선정	10.4(화)~10.28(금)
선정결과 발표	11월 초
예산배정·협약체결	12월

※ 세부 추진일정은 업무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신청 방법

-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(www.smes.go.kr/sme-expo) 온라인 접수
 - 신청경로 : 접속 → 로그인 → 사업신청 → 주관단체 사업 모집
 - 필수정보 입력 후, [참고3]의 제출서류를 하나의 zip파일로 업로드
 - ※ 우편접수 미 시행
 - 2023~2025년 유망 수출컨소시엄 既신청사업의 경우, [참고3]의 제출서류 중 [1.참가신청서, 2.사업계획서]만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

□ 유의사항

-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사업선정 후 허위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추후 사업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수서류 및 보완요청서류 미제출, 제출기한 미준수 등은 사업선정 평가에서 제외함
- 신청시 작성한 서류나 제출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오류, 서류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신청 주관단체에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「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름

□ 문의처

-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(02-2124-4073, 4074, 4075)

2. 주관단체

I. 단체(기업) 개요	단체(기업)명					대표자명			
	사업자번호					상근직원수	명		
	설립일					회원사수	개사		
	주소								
	담당자 연락처	부서/직위					담당자명		
		전화					휴대폰		
		E-Mail					FAX		
주요사업					전시주최 유무	○ (전시회명 :), X			
II. 수출지원 조직인력	담당부서명					해외조직 유무	○ (국가 :), X		
	인력 및 경력현황	성명	부서	직급	경력연수	주요경력	관련 자격증		
III. 해외수출 지원사업 실적 <small>*최근4년(18~21년) **별지 사용 가능</small>	구분	연도	명칭		지원기관	참여기업수	지원기관		
	(전시회)								
	(상담회)								
	:								

상기와 같이 2023년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신청합니다. 상기 내용은 사실에 바탕하여 작성 되었으며, 향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인되거나 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.

2022년 월 일

단체명 :

대표자 :

(직인)

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

『○○○수출컨소시엄』 사업계획서

1. 수출컨소시엄 개요

□ 사업명 : 국가명 + 도시명 + 품목 + 전시회/상담회명

□ 추진기간 :

○ (1단계) 2023. 00. 00 ~ 00.00 (00일간)

○ (2단계) 2023. 00. 00 ~ 00.00 (00일간)

○ (3단계) 2023. 00. 00 ~ 00.00 (00일간)

□ 타겟시장 : * 국가 및 도시명 기재

□ 참여기업 : 00개사

□ 참여품목 : 00품목, 00품목

□ 총 예산 : 00천원 (정부보조 00천원, 기업부담 00천원)

□ 성과목표 설정

	목표치	비고 (목표설정 근거 등)
상담액	건, 달러(US)	
현장 계약액	건, 달러(US)	
1년내 예상계약액	건, 달러(US)	

□ 추진일정

단계	기간/일자	내 용	비고
1단계		참가업체 모집	
		시장조사, 바이어 발굴	
		현지홍보 등	
2단계		현지 운영 *지역별	
		현지 운영 *지역별	
3단계		바이어 초청상담회	
		참여기업 성과 및 바이어 관리	
종료		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	

○ 기타 특이사항 :

2. 단계별 운영계획

가) 1단계 (사전준비단계)

□ 목표시장 진출전략

- * 전년도 분석, 목표시장 특성 및 선정 이유
- * 품목 전략(주요 구성품목의 세계시장 규모 및 국내 수출규모 통계 등)
- * 품목 경쟁요소 분석(가격, 기술, 품질, 마케팅, 유통) 및 주요경쟁국 분석

□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

- *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
- * 참여기업 모집, 선정(기업 참가비 계획, 선정시 시장성 평가 반영여부 등)
- * 업체교육 및 업체수요 반영계획(진행계획 안내, 상담스킬, 상담장·부스연출기법 교육, 부스 배정, 협력업체 선정 등)

□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

- * 바이어 발굴전략,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

□ 현지 홍보

* 마케팅 전략(홍보물, 현지광고 등),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 포함

□ 장치사, 운송사 등 협력업체 선정계획

나) 2단계(현지파견단계)

□ 현지활동 개요

- 개최 일자 :
- 개최 장소 : *상세지역, 호텔명
- (전시회) 전시회명 :
- 한국관 또는 통합한국관 계획

	기본 면적 (s/m)	업체수	총 면적 (s/f, s/m)	업체부스	홍보부스
				(s/m)	(s/m)
신청 주관단체					
타 정부기관 자자체					
개별 참가					

□ 전시부스·상담장 운영

- * 전년도 분석(한국관 위치 표시한 전시장 도면, 상담장 사진 등)
- * 금년도 개선방안(한국관 위치, 상담장 구성, 업체수요 반영방안),
- * 상담장·전시부스의 디자인연출, 제품디스플레이 방안 등
- * 전시부스 사전예약·임차 여부, 임차료 지급여부, 임차방법(개별기업 임차, 주관단체 일괄임차)
- * 장치 설치방법(주최측 설치, 국내제작 후 운반설치, KOTRA 협조, 현지용역업체와 계약 등)

□ 현지 파견일정 *일자별 작성

일 자	국가, 지역	주요 내용	비고

다) 3단계(사후관리단계)

□ 바이어 초청계획

* 일정, 운영방식 등

□ 바이어 관리 및 참여기업 성과관리

* 바이어 데이터 관리계획 등

4. 주관단체 운영 계획

□ 참여기업 지원방안

- * 전년도 주관단체 역할 분석, 차별화된 참여중소기업 지원방안
- * (상담회) 공동마케팅 활동 개선방안 (전시회) 공동홍보부스 개선방안
- * 바이어 데이터 관리 및 최신성 유지 방안
- * 주관단체 역량강화 계획 등

□ 현지 수행사 현황

* 2개 이상의 수행사가 있는 경우 모든 수행사 현황을 작성

수행사명					
대표자명			전화번호		
주소					
매출액			상시근로자수		
담당자	(성명)	(전화)	(이메일)		
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코트라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민간네트워크 <input type="checkbox"/> 전문무역상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업종별 협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인증보유사				
관련사업 수행실적	사업명	기간	참가국, 지역	참가 업체수	주관기관 (지원기관)

※ 해외민간네트워크, 전문무역상사 등의 인증·허가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

※ 정부기관 또는 현지국가의 업종단체를 현지수행기관으로 할 경우 사업추진부서 현황 및 마케팅 지원실적 작성 불필요

○ 수행사 인력현황 * 조직도 본문 삽입 또는 별첨

성명	부서(직급)	경력연수	주요경력	관련 자격증

5. 정부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

6. 복수로 사업 신청시 우선순위 기재

※ 별첨 : [참고3] 제출서류

수출컨소시엄(해외전시회) 세부 지원 기준

단계	지원항목	지원율	한도	비 고
1단계 (사전 준비)	■ 사전B2B마케팅	-	100만원/업체	·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, 전시회 前 온라인 상담 ·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·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, 패키징,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*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
	■ 해외마케팅·홍보		100만원/업체	· 온오프라인 해외홍보·광고 ·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혹은 전자 카달로그 등
2단계 (현지 파견)	■ 전시장 임차료	70%	-	· 기업당 1부스 內 (보험·등록료, 의무납부 세금 포함) * 대형전시물 등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최대 4부스까지 지원
	■ 전시장 장치		-	·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
	■ 차량 임차		-	· KOTRA 무역사절단 차량임차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* 파견기간 + 최대 2일,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
	■ 통역비		1인/업체	·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內 실비 인정
	■ 물품운송료	-	해상운송 1CBM 편도	· 전시물품에 한함 (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) *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산업재(기계, 전기전자 등)는 왕복 지원 * 1CBM : 가로/세로/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*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에 준하여 적용
3단계 (사후 관리)	■ 국내 체류비	-	최대 30만원/1인,1일	·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· 최대 인정일수 : 상담일수+2일(숙박비만 인정, Standard) *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
	■ 초청 바이어 항공료	70%	-	· 이코노미 왕복 1명
	■ 상담장·차량 임차 및 장치		-	· 임차료 및 현수막, X배너 등 실비 인정 * 차량임차 : 파견기간 + 최대 2일 (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)
	■ 바이어 신용조사비		-	·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
	■ 통역비		-	· 영어, 중국어, 일어 20만원, 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
	■ 샘플발송비		100만원/업체	· 항공운송 기준(편도)
구성 운영 단계	■ 공동 홍보부스	100%	-	· 1부스 이내 임차(2부스 이상은 관리기관 사전승인 必) · 장치비는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적용
	■ 전시장 회선임차료		-	· 인터넷 2회선, Fax 1회선 이내
	■ 주관단체 담당자 항공료, 국외여비		-	· 공무원(5급) 출장 기준(1인, 1회) * 컨소시엄 규모 15개사 초과 시 1인 1회 추가 ·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內 실비 인정
	■ 간담회비(국내)	-	5만원/업체	·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간담회비(현지)		5만원/업체	·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이해보험		실비	·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
	■ 기타 운영비		5만원/업체	· 주관단체 출장자 비자발급, 여행자 보험, 예방접종, 사업용 문구비, 방역용품 등 최대 100만원 한도 內 실비 인정

*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

수출컨소시엄(수출상담회) 세부 지원 기준

단계	지원항목	지원비율	한도	비고
1단계 (사전 준비)	■ 현지바이어 발굴· 매칭 및 수출컨설팅	-	100만원/ 업체	· 참여기업별 매칭 바이어 명단 제공 ·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·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, 패키징,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*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
	■ 해외마케팅·홍보		100만원/ 업체	· 온오프라인 해외홍보·광고 ·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혹은 전자 카달로그 등
2단계 (현지 파견)	■ 상담장 임차료	70%	-	· KOTRA 무역사절단 상담장 임차료 준용하여 실비 인정
	■ 상담장 구성		-	· 상담장 구성(현수막, X배너 등) 실비 인정
	■ 차량 임차		-	· KOTRA 무역사절단 차량임차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* 파견기간 + 최대 2일,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
	■ 통역비		1인 /업체	·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물품운송료		-	해상운송 1CBM 편도
3단계 (사후 관리)	■ 국내 체류비	70%	-	·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· 최대 인정일수 : 상담일수+2일(숙박비만 인정, Standard) *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
	■ 초청 바이어 항공료		-	· 이코노미 왕복 1명
	■ 상담장·차량 임차 및 장치		-	· 임차료 및 현수막, X배너 등 실비 인정 * 차량임차 : 파견기간 + 최대 2일 (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)
	■ 바이어 신용조사비		-	· 공인기관이 수행한 신용조사비 실비 인정
	■ 통역비		-	· 영어, 중국어, 일어 20만원 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
	■ 샘플발송비		100만원/ 업체	· 항공운송 기준(편도)
구성 운영 단계	■ 주관단체 담당자 항공료, 국외여비	100%	-	· 공무원(5급) 출장 기준(1인, 1회) * 컨소시엄 규모 15개사 초과 시 1인 1회 추가 ·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간담회비(국내)		5만원/업체	·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간담회비(현지)		5만원/업체	·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
	■ 이해보증보험		실비	·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
	■ 기타 운영비		5만원/업체	· 주관단체 출장자 비자발급, 여행자 보험, 예방접종, 사업용 문구비, 방역용품 등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

* 사업별 최소 2단계 이상 수행 필요, 이해보증보험료는 사업비 외 100% 추가 지원

수출컨소시엄사업 평가표

구 분	하위항목	배점	평가구분					비고		
			A	B	C	D	E			
사업계획 (45)	○[1단계] 사전 준비/교육 - 목표시장 진출전략(경쟁요소 분석 등) - 기업모집, 교육전략(부스연출, 상담기법 등) - 바이어 발굴, 매칭 계획 - 현지 사전마케팅 계획	15 (3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전문가 평가		
			15	12	9	6	3			
		○[2단계] 현지파견 - 한국관 위치, 디자인, 현지화전략 - 상담장 운영계획 - 세부 파견일정 - 업체수요 반영 계획	15 (3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	매우 미흡	
	15			12	9	6	3			
	○[3단계] 후속상담 및 사후관리 - 바이어 초청상담회 계획 - 기업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계획 - 바이어 데이터 관리계획	15 (3)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		
			15	12	9	6	3			
	전략성 (10)	○ (전시회) - 유망성 - 품목 전략성	○ (상담회) - 현지수행사 역량 - 품목 전략성	10	매우 우수	우수	보통		미흡	매우 미흡
					10	8	6		4	2
	주관단체 운영능력 (45)	○ 예산 및 사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보 유 등 운영능력의 적절성	45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	매우 미흡	정량 평가
5				4	3	2	1			
○ 정부, 지자체 해외마케팅 사업실적 (최근 4년)		5회 이상	3회 이상	1회 이상	없음					
		5	8	6	4					
○ 해외전담인력 (겸직 제외)		전담인원수	5명 이상	4명	3명	2명	1명			
			2.5	2	1.5	1	0.5			
○ 해외전담인력 (겸직 제외)		경력기간 최장 1인 기간	10년 이상	7~9년	5~6년	3~4년	3년 미만			
			2.5	2	1.5	1	0.5			
○ 주관단체 성과평가		상위10% 이내	상위30% 이내	상위50% 이내	상위60% 이내	상위60% 초과				
	30	27	24	21	18					
가감점 (±10)	○ 가점 - 참가전시회 정보(Review) 작성여부(각 1점) - FTA 체결국 개최 전시회 여부(1점) -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(결산서상 수익발생시)(2점) - 해외전시회 역량강화 교육 수료증 1건 이상 제출(1점) ○ 감점 - 사업취소, 중도포기(각 -3점) - 참여기업 민원 접수(각 -2점)	±10	※ 감점 제외 천재지변, 해당국가 소요상황 등 불가항력적 사 유로 사업취소, 중도포기한 사례로 관리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감점 제외					외부 용역 기관		
합 계								100		

* 신규단체는 직전년도 수출컨소시엄 참여 주관단체의 성과평가 평균점수를 적용

참고3

제출서류 목록

순번	구분	신청서류	비 고
1	필수 (공통)	참가신청서	[붙임1] 직인 후 스캔
2		사업계획서	[붙임2] 작성
3		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	사본
4		법인설립 인·허가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	사본
5		2021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	사본
6		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	발급일 30일 이내
7	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	발급일 30일 이내
8		수출지원 전담인력 경력증명서 등	사본
9		예산세부내역	별도 엑셀파일 양식
10		해상운송료 견적서	해상편도 1CBM 기준
11	필수 (전시회)	신청 전시회 주최사 브로셔 및 인보이스 * 주최 측 미공개시, 직전년도 자료로 대체	부스임차료 등 확인
12	해당시	타 부처 및 지자체 해외마케팅 사업 실적증명서	사본 (코트라 실적증명서 제외)
13		현지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인증서	사본
14		참가전시회 정보(Review) 작성자료	해외전시포털 등록화면 캡처
15		해외전시회 역량강화 교육 수료증	사본

* 상기 서류 제출은 접수마감일인 9.30(금) 17:00까지 해외전시포탈에 제출 마감 必

**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하여,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* 필수서류 누락 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